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51호서식] <개정 2023. 5. 31.>

(　　년도)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

(중간처분업자용)

년　　월　　일

문서번호:

수 신: 시·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

발 신: (업소명)　　(대 표)　　인

① 상 호 (명 칭):	② 성 명(대 표 자):	③ 업 종:
④ 허가번호 제　　호 설치승인(신고)번호 제　　호	⑤ 소 재 지(사 무 실):	

⑥ 영 업 대 상　폐 기 물 :

	시설·장비명	규 격 (능 력)	허가일 또는 설치승인(신고)일	사 용 개 시 일	소 재 지
⑦ 시설 및 장비 명세					

⑧ 폐 기 물　위 탁　및　중 간 처 분　내 용

㉠ 폐기물 종류	㉡ 성질·상태	위탁내용			㉥ 중간처분내용(톤/년)					㉦ 보관량 (톤)
		㉢ 업소명	㉣ 소재지	㉤ 위탁량 (톤/년)	소 계	소각	고온열분해	고형화	기 타	
총 계						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80g/㎡]

⑨ 잔재물 발생내용				⑩ 잔재물 처리내용				
㉠ 구 분	㉡ 폐기물 종류 (분류번호)	㉢ 발생량 (톤)	㉣ 성질・상태	㉠ 처리자 구분	㉡ 처리방법	㉢ 처리량 (톤)	㉣ 보관량 (톤)	㉤ 처리자 (장소)명
총 계								

작성방법

1. ⑧란의 ㉠란 및 ⑨란의 ㉠란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.
2. ⑧란의 ㉡란 및 ⑨란의 ㉣란은 폐기물의 성질・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.
 [1] 고상, [2] 액상
3. ⑨란은 ㉠란은 수탁(잔재)폐기물의 종류별 연번을 적습니다.
4. ⑩란의 ㉠란은 배출자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"자가"로 적고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"위탁"으로 적습니다. 다만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자의 코드번호를 병기합니다. (예: 위탁[2])
 [1] 폐기물처리 신고자, [2] 중간처분업자, [3] 최종처분업자, [4] 중간재활용업자, [5] 최종재활용업자, [6] 종합재활용업자, [7] 해양배출업자, [8]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, [9] 공공처리(국가)시설, [10] 기타
5. ⑩란의 ㉡란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.
6. ⑨란 및 ⑩란에서 "잔재물"이란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.

우○○○-○○○ / 주소 / 전화번호()○○○-○○○○ / 전송()○○○-○○○○
담당부서 담당자